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호	494
-------------	-----

제출연월일 : 1998. 8. 17.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어촌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1)

3. 참고사항

- 도세정13400 - 10165('98.07.21)호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통보」

4. 본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1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생략 제24조의1 (신 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4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 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